#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

#### 상품정보내용펼치기

### 상품특징

• 무주택 청년가구의 전월세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대출로 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4천 5 백만원 및 월세자금에 대해 최대 1,200만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의 합계액은 5천 2백만원 이내 (임차보증금의 80%이내))

#### 대출신청자격

•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 6천 5백만원 이하 및 월세금 7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(보증부 월세계약)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불하고,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. 대출신청일 현재 만 34세 이하인 단독세대주(단독세대주 예정자 포함)로서 무주택인 고객(단독세대주 예정자 자격인 경우 임차목적물에 반드시 단독세대주로 전입해야함)2.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(배우자가있는 경우 부부합산 기준)3.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'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'중 소득 3분위전체가구 평균값(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 /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(http://nhuf.molit.go.kr)에서 확인가능) 이하인 고객\* 증액갱신계약(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포함)의 경우, 주민등록등본상 임차목적물에 1년(공공임대주택은 3개월) 이상 거주(舊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필수)\*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만 가능하고,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함\*임대인이 외국인인경우 취급불가

## 대출금액

• 임차보증금 대출과 월세금 대출의 합계액이 5천 2백만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80% 이내)임차보증금 대출: 4천5백만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70% 이내)월세금 대출: 1,200만원 이내(월 50만원, 24개월 기준)

##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• 대출기간: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(최장 10년 5개월 사용 가능)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2년 1개월 추가 연장 가능(최장 10년 5개월 추가 연장)\*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임차보증금 및 월세금 대출금(또는 직전 연장 시 대출잔액)의 10% 이상 각각 상환, 미상환시 연 0.2%p (연장기간이 1년1개월 이하인 경우 연 0.1%p)금리가 가산됩니다. (단, 자산심사신청일 24.7.30이전인 경우 연 0.1%p금리가 가산됩니다.)

• 상환방법: 일시상환<이자계산방법>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 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(윤년은 366)로,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 합니다.<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>\*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「상품안내」의 "대출기간 및 상환방법"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일시상환대출 :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,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.원리금균등 분할상환 :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.원금균등 분할상환 :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,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.혼합상환 :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,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.휴일 대출 상환 :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.(단,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) - 월세금에 대한 대출금의 일부상환은 월(회차)별 실행금액 단위별로만 가능합니다.

#### 대출대상주택

• 임차전용면적 60㎡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

#### 대출신청시기

- 신규계약: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
- 증액갱신계약: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

## 금리 및 이율리스트 펼치기

#### 기본금리

- 임차보증금 대출: 연 1.3%
- 월세금 대출: 연 1.0% · 20만원 까지 : 0% · 20만원 초과분 : 1.0% \* 적용금리는 대출 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

## 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

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

##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

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 위 기준 초과한 경우▶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.1%p 가산▶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

된 금리에 연 2.0%p 가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, 기한연장, 상환방법,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

#### 이자 선납

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이자 선납 제한

#### 중도상환수수료

없음

### 이용조건리스트 펼치기

#### 담보

•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(보증료 고객부담)

### 월세대출금 지급

- 대출실행 후 임대차계약기간 범위(최대 24회차)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.
-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월세금 지급(변경)신청서(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용)를 제출해주셔야 하며,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가 확인되면 월세 대출금이 지급됩니다.
-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고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됩니다.
- 대출실행 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(최대 2년)에서 대출금액이 확정되고, 고 객요청 및 연체발생 등으로 인해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.\* 단, 직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해당회차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해당 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

## 유의사항

## 임대차계약 종료 후 '월세금 대출' 상환 유예를 위한 대환대출

▶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이용 중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월세금 대출 상환 유예가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· 대출대상 : 청년전용 버팀목 전월세대출 이용 중 '임차보증금 대출'을 상환하고, '월세금 대출'에 대한 상환 유예가 필요한 고객· 신청시기 :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전부터 청년전용 버팀목 월세대출 상환 전까지· 대출기간 : 2년 (단, 기존 청년전용 버팀목 월세대출 기간을 합산하여 , 최장 10년 4개월 간 이용 가능)· 대출한도 : 최대 1,200만원 (기존 청년전용 버팀목 월세대출 잔액범위 이내)· 대출조건 : 만기 일시상환 방식,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전용 월세대출보증서 담보 취득· 대출금리 :- 기본금리 : 연 1.0% (2025.06.23 기

준,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)- 적용금리 : 기본금리에 기존 월세금 대출의 미상환 가산금리를 합산하여 적용· 중도상환수수료 : 없음· 기타사항 : 기한연장시 마다 최초 대환대 출금액의 25% 이상 상환 필요

## 유의사항 및 기타리스트 펼치기

## 상품변경에 관한 사항

<변경내용>口 대출기간 중 연장횟수 제거口 기한연장시 10% 미상환 가산금리 부과방식 변경<기존고객적용여부>여<시행일>2025.06.23
<변경내용>□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금액 변경<시행일>2025.01.01<기존고객적용여부>부<변경 
내용>ㅁ 고객 안내 유의사항 및 기타 내용 추가▶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기금의 구입 및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ㅁ 고객 준비서류 변경전 - 전입세대 열람내역(동거인포함) 변경후 - 전입 세대확인서.<시행일>2024.07.31<기존고객적용여부>부
<변경내용>□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: (2021년 기준, 3억 2천 5백만원) 변경후 : (2022년 기준, 3억 6천 1백만

원)<시행일>2023.01.01<기존고객적용여부>부
경내용>□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변경전▶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주택도시기금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)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 변경후▶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2.0%p 가산<시행일>2022.04.11<기존고객적용여부>부
행주체 명확화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담당합니다.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(1566-900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시행일>2020.07.17<기존고객적용 여부>적용
어두>직용
>2020.07.1/<기존고객식용여부>식용

기금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) 공시금리 적용 변경후 :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조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부덕도시 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( 년 월 일)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포털(http://nhuf.molit.go.kr)에 공시된 금리를 적용<시행일 >2020.03.09<기존고객적용여부>미적용
<변경내용>□ 고객준비서류 추가(전세금안심대출보증 매뉴얼 반영) 전입세대열람내역<시행일>2020.03.09<기존고객적용여부>적용

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.2% 고정금리 적용(주신 보거절자 연 4%)<시행일>2019.11.08<기존고객적용여부>미적용<변경내용>□ 대출대상 자 요건 추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 계금융복지조사의 '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'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(2018년 기준, 2.80억원)□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사항 추가 대출실행 전: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 대출실행 후 :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 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3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▶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 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.1%p 가산▶ 소득3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3.3% 고정금리 적용(주신보거절자 연 4%)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. 기한 연장, 상환방법,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口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선납 제한사항 추가 원금 및 이자 선납 :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(분할상 환인 경우) 및 이자 선납 제한□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고객 준비서류 추가 (필요시)자 산심사 : 부동산, 건축물, 자동차,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<시행일>2019.9.30< 기존고객적용여부>미적용

#### 본 공시 내용의 유효기간

• 상품 시행일: 2019.01.23

유효기간: 2025.06.24 ~ 2026.12.31

##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

▶ 이자를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 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, 대출만기일 경과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▶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+ 연 4%p,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+ 연 5%p가 적용됩니다.▶ 연체이자율(지연배상금률)이 연 10%를 초과하는경우에는 연 10%가 적용됩니다.<기한의 이익이란?>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이익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▶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과 『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』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

▶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. 수입인지대금은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, 근저당권설정비용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(등록면허세, 지방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

료)은 은행이 부담하고,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/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.

#### <인지세>

대출금액	인지세액
5천만원 이하	비과세
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	7만원(각각 3만 5천원)
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	15만원(각각 7만 5천원)
10억원 초과	35만원(각각 17만 5천원)

- ▶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 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
- ▶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(지급보증 대급금 포함) 보유,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,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▶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(1599-1771)로 문의하시거나, 홈페이지(www.kbstar.com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▶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(http://nhuf.molit.go.kr)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.

## 필요서류

□ 본인신분증□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(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이 된 부동산 전자계약서의 경우 원본으로 인정)□ 임차보증금의 5% 이상 지불한 영수증□ 新·舊 임대차계약서 : 보증금 증액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□ 전입세대확인서 : 임차목적물이 단독, 다가구주택인 경우□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(1개월이내 발급분)□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※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□ 가족관계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분) : 단독세대주, 배우자분리세대, 결혼예정자 등□ 결혼예정 증빙서류(결혼예정자의 경우) :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□ 재직(사업영위) 및 소득확인서류(본인 및 배우자)※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(소득 종류 확인 목적)-근로소득자: 재직증명서(재직회사 사업자등록 중 사본 첨부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※ 단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(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) 생략 가능※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(또는 계좌 거래내역서) 추가 필수-사업소득자 등 : 사업자등록증명원/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□ (필요시)자산심사 :

부동산, 건축물, 자동차,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\*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2553호 (2025.06.24)] / 유효기간(2025.06.24~2026.12.31)